

행정박물 관리대상(제46조제1항 관련)

유 형	범 위
관 인(官印)류	· 청인 및 직인 등
건 본 류	· 훈장·포장 등의 건본류 및 도안류
상 징 류	· 업무와 관련하여 상징성을 지니는 현판, 기(旗), 휘호(揮毫), 모형, 의복, 공무용품 등의 상징물
기 념 류	· 위원회의 주요 홍보, 행사, 활동 중에 생산된 홍보물 및 기념물
상장·상패류	· 위원회가 수여받은 상장류 또는 상패류
사 무 집 기 류	· 중앙위원회 위원장, 상임위원, 사무총장 등 주요 직위에 있던 사람이 업무수행에 사용하였던 사무집기류 등
그 밖의 유형	· 선거·정당 관련 행정박물류로 중앙위원회 훈령으로 정한 그 밖의 유형